#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647

발의연월일: 2025. 1. 20.

발 의 자: 강경숙·김준형·정춘생

김문수 · 김준혁 · 박은정

백승아 • 황운하 • 문정복

서왕진 • 신장식 • 김선민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안전 및 학습 등을 위하여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를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액상형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 운영되는 문제가 있음. 무인판매점은 신분증 확인 등이 어려워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도 금지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8 호).

법률 제 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8호 중 "담배를"을 "담배(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는 담배자동판매기는 제9조제1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에 따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 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 터 제32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 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 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 17. (생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 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 -----담배(전자 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 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판매기(「유아교육법」 제2 담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에서 같다)를-「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

	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
	구역은 제외한다)
19. ~ 32. (현행과 같음)	19. ~ 32. (생 략)